

앞서가는 공제, 신뢰받는 공제

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

440-805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95-6 (화물공제 경기회관6층) TEL 031-259-3341, FAX 031-259-3436

업 무 2 과

과장 : 지 희 삼

담당자 : 신 대 웅

문서번호 : 경기 업무 제 1826호

시행일자 : 2013. 8. 23

수 신 : 각 조합원사

참 조 : 보험담당자

선결		지시	
접	일자	결재 · 공람	
	시간		
수	번호		
처 리 과			
담 당 자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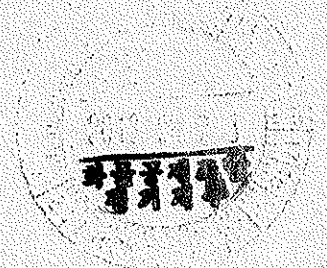
제 목 : 『착한운전 마일리지제』 업무협약(MOU) 체결 시행에 따른 안내

1. 귀 사의 사업이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조합은 경찰청에서 법 집행 강화보다는 교통 법규 준수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『착한운전 마일리지제』 업무협약(MOU)을 2013년 8월 5일 체결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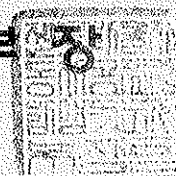
3. 『착한운전 마일리지제』는 경찰청에서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중으로 별첨의 안내 자료와 같이 운전자가 서약서를 작성제출하고 1년간 무위반 · 무사고 조건을 준수하면, 법규준수 운전자의 기존법규위반 벌점(10점)을 감경 또는 벌점이 없는 운전자에게는 적립(10점)해주는 제도로, 조합원사 임직원 및 소속 운전자(차주)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별첨서약서를 작성 우리조합에 접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
별 첨 : 서약서 및 안내문건 · 각 1부, “끝”



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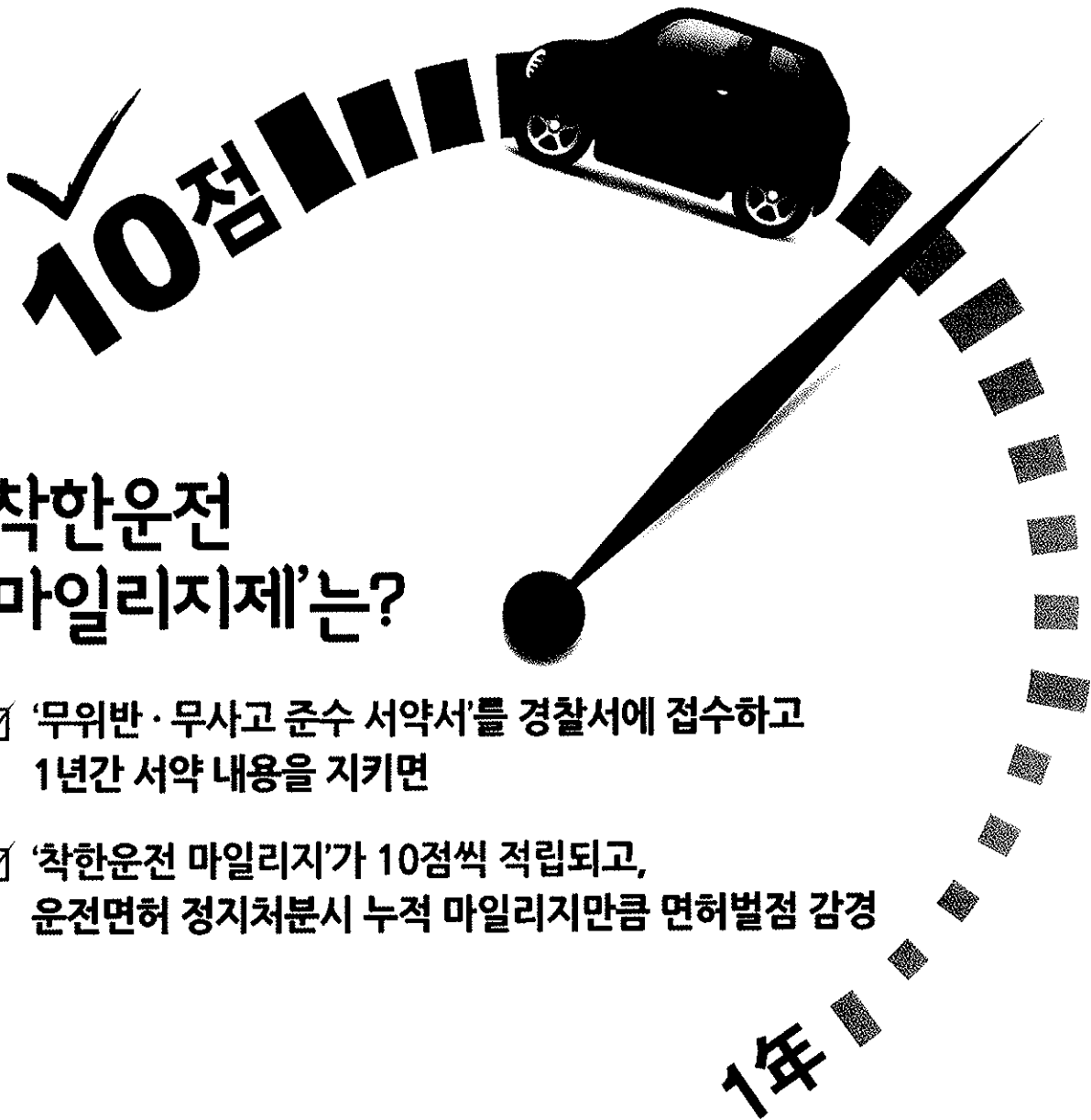
경 기 지 부 장



8월 1일부터

‘착한운전 마일리지제’ 시행

8월5일 화물공제조합과 경찰청이 ‘착한운전마일리지제’ 업무협약체결



‘착한운전 마일리지제’는?

- ☑ ‘무위반·무사고 준수 서약서’를 경찰서에 접수하고
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
- ☑ ‘착한운전 마일리지’가 10점씩 적립되고,
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감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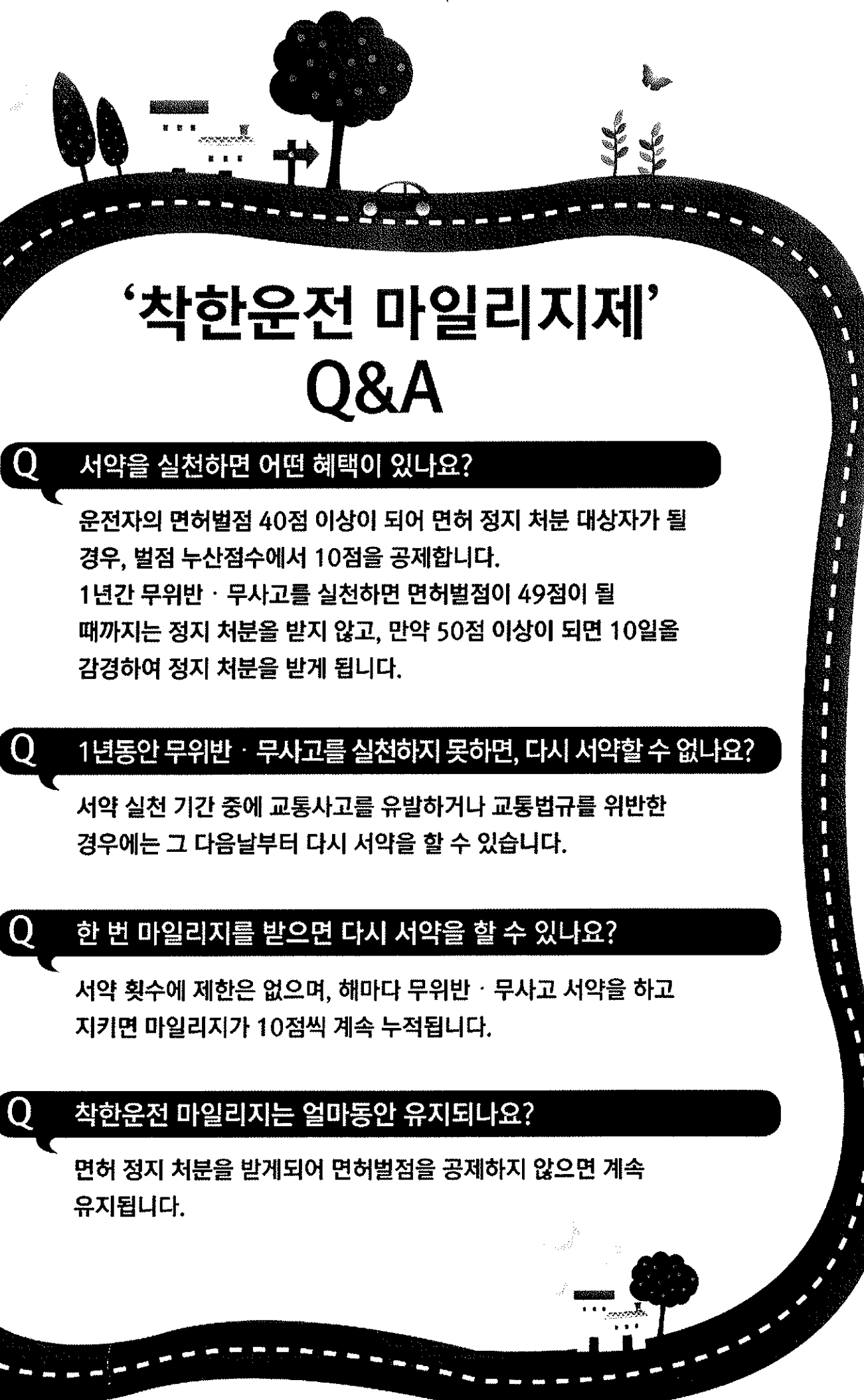
대 상	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
서약접수	2013년 8월 1일부터 전국 경찰서·지구대·파출소
실천기간	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
실천내용	무위반 :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·정지처분, 범칙금 통고처분,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 :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
혜 택	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(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)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·정지일수(1점에 1일) 감경



경찰청
Korean National Police Agency



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



‘착한운전 마일리지제’ Q&A

Q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?

운전자의 면허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,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.
1년간 무위반·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, 만약 5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Q 1년동안 무위반·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,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?

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.

Q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?

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, 해마다 무위반·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.

Q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얼마동안 유지되나요?

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되어 면허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.

접수번호

면허증 대조 확인

서 약 서

성 명	
주민번호	
면허번호	
상기 본인은 오늘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. 2013년 월 일 서약자 (서명)	
서약기간	2013. . . ~ 2014. . .
서약자 준수사항	① 무위반 :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·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제2항,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 ② 무사고 :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
성공혜택	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 부여
관련근거	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
경찰서장 귀하	